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가단5122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욱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2011. 2. 28. 미화 500,000달러를 한도로 외화지급보증 대출거래약정을, 2011. 2. 26. 신용카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아버지 C는 각 650,000달러 및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소외 은행은 2013. 6. 28. 위 각 약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F 유한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 F는 소외 회사 및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76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7.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8. 6. 확정되었다.

1. 원고(F)에게,

가. 피고 소외 회사는

(1) 538,662,433원 및 그 중 470,409,978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0,861,212원 및 그 중 9,552,277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1) 미화 65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위 가.(1)항 기재 돈을,

(2)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2)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라. F는 2018.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2019. 5. 27.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딸인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위 송금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C의 친구인 J가 2014. 2. 7. 피고 및 G에게 대여한 돈이고, 이 사건 금원의 송금당시 C는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닌 G의 재산이고, 그 송금행위도 C의 처분행위가 아닌 G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8,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가 2014. 2. 7.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및 G이 같은 날 J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및 C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0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 15.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가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2017. 8월경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이 J가 송금한 금원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또한 C가 구속된 이후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G의 처분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J가 송금한 위 5,000만 원은 신용카드 대금 및 차량할부대금 등으로 소비되거나, 2014. 4. 8. 그 중 3,000만 원이 출금되는 등 대부분 사용되어 2014. 9. 14.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3,809,645원에 불과하였다.

② G은 1995년경부터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여 왔고, 2017. 2월경부터 2019. 4월경까지 대부분을 외국에 체류하였으며,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에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C의 구속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G이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C의 채권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G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12066), 위 법원은 2021. 3. 16. ‘G이 이 사건 계좌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G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해림

별지

증여계약 내역

1. 2017. 8. 14.자 10,000,000원
 2. 2017. 8. 18.자 10,000,000원
 3. 2017. 8. 21.자 10,000,000원
 4. 2017. 8. 22.자 10,000,000원
 5. 2017. 8. 23.자 10,000,000원
- 합계 50,000,000원

